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8 선고 2022나641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
담당변호사 김성진, 임경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

변 론 종 결 2023. 2. 1.

판 결 선 고 2023. 2. 8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. 3. 24. 선고 2020가단564051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2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6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0,389,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는 원고에게 50,389,5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2, 3항과 같다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부터 둘째줄 2)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.

「2) 을 제10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, 이 법원에서의 G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, 2021. 6. 9.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81,558,0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며,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였으므로,

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281,558,01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,000,000원을 공제한 201,558,010원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50,389,502원(=201,558,010원×1/4, 원 미만은 버림)임이 계산상 명백하다.

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및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인 50,389,502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,389,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수정, 판사 정하정, 판사 진현지

목 록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167㎡
2. 대구광역시 달서구 ,
세원백돌초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
1층 98.09㎡
2층 81.74㎡

